

定 款

한국기술창업진흥재단

**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
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**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)

이 단체의 법인명 국문은 '한국기술창업진흥재단' 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'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'라 한다. 영문 약칭은 'KFTE'로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단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,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이 단체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경영 컨설팅업
2. 공공관계 서비스업
3.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4.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. 일반 서적 출판업
6. 미디어콘텐츠창작업
7. 시각 디자인업
8.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
9. 비거주용 건물 전대업
10. 전자상거래 소매업
11.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
12. 온라인 광고업 및 온라인 광고대행업
13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14.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
15.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
16.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17. 위 각 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
18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제 3 조 (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)

- ① 단체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와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광고 방법)

단체의 광고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kfte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에 게재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(또는 운영위원회)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 7 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(또는 운영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-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제 8 조 (임원의 구성)
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이사장 1인 이상 3인 이하,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500인 이하, 운영위원 2인 이상 500인 이하, 감사 1인 이상을 둔다.

제 9 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이사장, 이사, 운영위원, 감사는 제 17 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 장 이사회 및 총회

제 13 조 (이사회 의 구성)

-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이사회 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 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15 조 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6 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 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 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 19 조 (회의록)
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 4 장 사무국

제 20 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
-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 5 장 회계 및 재정

제 21 조 (재산의 구분)
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2 조 (수입금)
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 23 조 (출자 및 용자)
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 24 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-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 장 보칙

제 25 조 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 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7 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제 28 조 (운영규정)
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5.08.25 부터 시행한다.

위 비영리단체 '한국기술창업진흥재단'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
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
2025 년 08 월 25 일

